

## II

---

# 접경지역과 민북마을의 이해







## II. 접경지역과 민북마을의 이해

### 1 접경지역 및 민북마을 개념

- 접경지역과 민북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은 국경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접경지역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정전협정으로 형성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Line]과 접한 지역을 의미함
-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Zone]’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까지의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그리고 민간인출입통제선 남방지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각 2km 후방의 북방한계선[NLL]과 남방한계선[SLL]까지로 유엔(UN)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함
- 다만, 남한과 북한의 이해에 따라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의 근접지역은 800m로서 접경지역 중에서 민북지역은 남방한계선과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사이인 민간인출입통제구역임
- 민북마을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형성된 마을로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법률 제10898호] 제2조의 의하면 “접경지역”이란 1953년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출입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의미함
-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해석하고, 법률에 따른 접경지역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옹진군이 있고, 경기도에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에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해당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경기도에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이며, 강원도에는 춘천시가 해당되고 또한, 비무장지대 내집단취락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이 있음

## ② 민북마을 특징

- 민북마을은 출신과 성분이 다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개척영농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집단 거주하는 인위적인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음
- 이 때문에 초기에는 풍속과 풍습, 언어, 개인기질 등 여러 이질감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질문화들은 상호 동화·흡수·삼투되면서 민북마을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음
- 양구 해안면 만대리의 도산천제는 일제시대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제비를 낼 정도로 마을의 관습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개척민들이 입주하면서 기독교와 천주교 등 신흥종교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음
- 이처럼 민북마을에서는 신흥종교가 전통 민속을 대체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민북마을은 또 주민들과 군인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군인과 주민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처럼 보일 정도로 일방적인 관계였지만 차츰 주민들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군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보니 민북마을 주민들은 군대 용어와 혼합된 '민통선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 이밖에 외지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특징임
- 경기도의 민북지역 대부분이 38도선 이남지역으로 휴전 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75% 이상 됐지만 강원도의 경우 민북지역이 모두 수복지역으로 자립안정촌이나 재건촌, 통일촌 개발을 통해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 보니 원주민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음
- 철원군의 경우 원주민 구성비율은 45.5%로 비교적 높지만 양구와 고성지역은 각각 9.8%와 1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음

### 3 민북마을 유형 및 현황

#### ■ 민북마을 유형

- 민북마을은 설립 유형에 따라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 전략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립안정촌은 1959년부터 군사적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통제가 적은 지역에 형성되었고, 자립안정촌의 주민은 대부분 한국전쟁 이전에 거주하던 원주민(原住民)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립안정촌은 출입과 관련한 문제를 제외하면 일반 농촌마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재건촌은 민간인 보호와 이상촌 건설, 그리고 대북 우위성을 목적으로 1968년부터 1979년 사이에 형성된 마을임
- 재건촌은 입주민의 토지 개간과 정부의 주택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소규모 주택[9평,1가구 2주택]으로 입주민의 정착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통일촌은 1973년에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경작권을 보호하는 등 재건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형성된 마을임
- 전략촌은 1953년 8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의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마을로서, 정전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의 담당 지역으로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 마을임
- 민북마을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 민간인출입통제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7호에 따라 평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설정한 선을 의미함
- 이 선은 남북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km에서 20km 내외로 설정했고, 민간인출입통제선은 ‘미8군CXGC -P370.42호’에 의하여 1954년 2월 3일에 설정된 귀농선(歸農線)이 그 효시가 됨
- 1958년 6월 군사작전 과 보안상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 선의 북쪽 지역은 영농을 위한 출입과 영농입주가 허가되었음

- 귀농선은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비무장지대에 속한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정전협정으로 설치한 데 비하여 민간인출입통제선은 남한 측의 의지로 설정한 선임
-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풋말과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은 가시적인 선인 데 비하여, 민간인출입통제선은 비가시적인 임의의 가상선임
- 민간인출입통제선은 주요 도로의 진입로를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군(軍)통제초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민간인출입통제선은 1964년 5월 15일 미8군에서 한국군 제○군사령관 및 제○군단장에게 위임되었고 그 이후 이 선은 한국군 제○군 사령부 민사예규5-3[1972.11.1] 및 제○군 사령부 민사예규5-4[1978.1.1]에 의하여 한국군에 통제되었음
- 1978년 1월에는 각 사령부의 민사규정이 육군규정5-4에 의해 ‘민북지역 민사활동’으로 통합 제정되어 출입하는 주민에 관련한 통제가 시행되었음
- 민간인출입통제선은 1980년대 중반 처음으로 북상했고, 이 선의 북상으로 민북마을의 유형인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의 개념이 희석되었음
- 자립안정촌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이 북상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던 지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바뀌었고, 민북마을의 특수성이 사라졌음
- 이후 1995년 북방지역 민사활동규정이 개정되어 가구당 영농범위가 3ha5(헥타르)에서 10ha까지 증대되었음
- 민간인출입통제선은 1997년 두 번째 북상하여 통제보호구역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km로 축소되었음
- 2007년 한 차례 더 북상하여 통제보호구역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km에서 10km의 지역에 축소되었음
- 이 선의 북상과 더불어 주민의 요구에 따라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갔으며, 현재까지도 영농활동을 위한 시설규제 완화 요구 등 주민의 요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설치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등에 제한을 가져왔음
- 이 선의 복상과 입주민의 요구로 권리 보장은 확대해 갔으나, 이는 민북지역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출입과 그 외의 행위 통제는 실정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9780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13호], 동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35호], 그리고 합동참모본부규정 ‘민북지역 민사활동’[합참규정 319-01]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물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9년 9월 10일 시행되었음
- 또한, 합동참모본부규정인 민북지역 민사활동규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이 선의 북방지역에 관한민사활동 및 출입통제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민북마을 현황

- 재건촌 : 대북한 우위성을 보이고 방위조직의 강화를 통한 전선방어 기여, 유희경지의 활용 등을 위해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정책적으로 개발된 마을 도내 9개, 경기도에 3개 마을이 있음
- 대단위 협업영농방식으로 집단 정책해 황무지를 개간해 농경지를 확대했고, 도내에는 철원군 대마1·2리, 생창리, 정연리, 양지리, 이길리, 화천군 마현리,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오유2리 등이 있음
- 통일촌 : 재건촌의 문제점을 보완해 건설된 전략촌으로 도내에서는 1973년 입주한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가 유일함
- 입주자의 자격요건을 군복무를 필한 예비군으로 국한했고 경작권 양도 금지, 대리경작 및 외부인 고용 등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자립안정촌 : 군사시설이나 보안의 필요에 따른 통제가 재건촌이나 통일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민북지역마을 대부분이 포함되는 유형으로 도내에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20개 마을이 현존하고 있음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명파리, 마달리, 화곡리		
양구군	해안면	현1리(자월), 현2리(본부락, 새마을), 현3리 (동막동), 오유1리	오유2리 만대리(새마을)	
	방산면	천미리(고향골)		
인제군	서화면	서화1리(제주도, 금수동, 구십구골, 봉황촌) 서화2리(신촌)		
화천군	화천읍	신읍1리(늘아우, 호계동)		
	상서면	봉오3리(신월동)	마현리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관전리	대마1리, 대마2리	
	김화읍	도창리	생창리	유곡리
	근남면	마현 1리	마현2리	
	갈말읍	동막리	정연리	
	동송읍		양지리, 이길리	
			사곡2리, 마현1리, 마현2리	
계		20	9	1

자료 : 도민일보(2006.0.18일자), 기획특집, 민북마을

- 생창리, 유곡리, 마현1리, 마현2리, 정연리, 양지리, 이길리는 현 민북마을임

#### 4 민북마을 법적 규제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한사항

- 첫째,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다만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음
- 둘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을 제한하여 건물의 증축에 있어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2층 이하의 11m 높이의 건축만이 가능함
- 셋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를 금지함
- 넷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제한함



- 다섯째, 보호구역 등의 표지[보호구역 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 부설물을 포함한다]를 이전하거나 훼손을 금지함
- 여섯째,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를 금지함
- 일곱째,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을 금지함
- 여덟째,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홉째,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 ■ 영농인은 입주 영농인과 가입주 영농인으로 구분

- 영농인은 입주영농인과 가입주영농인으로 구분하여, 입주영농인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이며, 가입주영농인은 농번기[4월~10월]에 민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사람을 의미함
- 이외에 출입영농인이 있는데, 이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남방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북지역 경작지에 출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임
- 따라서 출입 및 활동 부분에서 가입주영농인과 출입영농인의 활동이 제한되고, 출입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함

### ■ 통행지역의 제한

- 통행지역 관련해서 담당부대장의 출입 허가 후에도 취락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르는 통행로, 또는 취락지역이라 하여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통제함
-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는 통행로는 통행할 때 별도의 출입을 허가받아야 하고, 민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승인을 받아야 함
- 이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연고자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영농 및 축산활동 종사자 등 민북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함

## ■ 체류기간 제한

- 체류기간 관련해서 상시 출입자를 제외한 출입대상자는 당일 출입이 원칙이며, 체류기간이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통제초소에서는 체류자에 대하여 일일단위로 체류자의 신원 확인을 함

## ■ 출입허용시간 제한

- 출입허용시간 관련해서 민북지역의 출입허용시간은 군사작전에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임

〈표 II-1〉 민북지역 출입허용시간

구분	허용시간	구분	허용시간	구분	허용시간
1월	07:10~18:20	2월	06:30~18:50	3월	05:50~19:30
4월	05:10~19:50	5월	04:40~20:20	6월	04:30~20:40
7월	04:40~20:20	8월	05:00~20:10	9월	06:20~19:40
10월	05:50~18:50	11월	06:20~18:20	12월	06:50~17:50

자료 :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2013)

## ■ 휴대품과 장비 통제

- 휴대품 중 군사보안 및 군 작전에 제한되는 물품[카메라,수렵장비,고성능통신장비,어로장비 등]은 통제초소에서 회수함
- 중장비[5톤 이상]및 특수 장비에 관한 출입은 48시간 전에 행정기관을 거쳐 출입을 신청하고 관할부대장의 승인 후 출입함

## ■ 복장 제한

- 민북지역 내의 각종 영농지 또는 작업장에서 식별과 통제를 위해서 출입자의 복장을 제한함
- 복장은 지역 환경과 배치되는 색깔의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겨울철에는 적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함
- 출입영농인과 각종 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민간인은 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음

- 규정위반자에 관한 기본 지침은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즉시 제재[고발]을 실시하고, 자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단계에 따라 제재 수를 설정하여 조치함
- 제재는 1단계로부터 4단계까지로서 1단계는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경고 조치하고, 2단계는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출입증을 일주일간 회수하며, 3단계는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출입증을 회수함
- 마지막으로 4단계는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행정관서에 고발하며, 출입증을 영구히 회수함